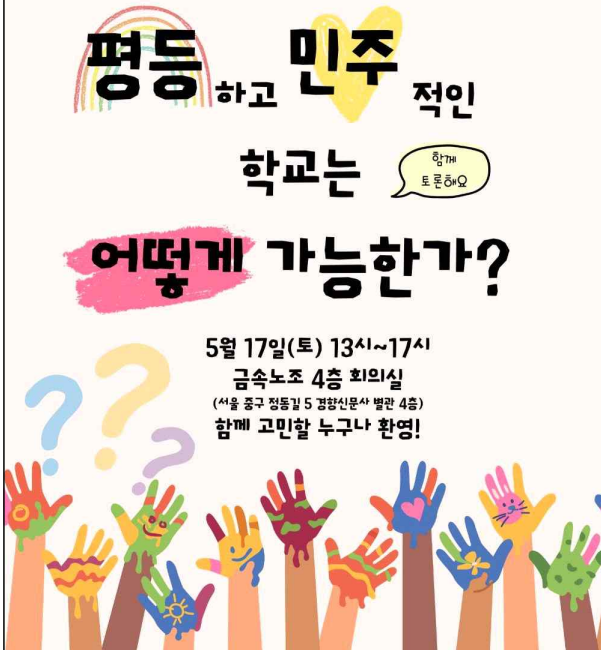


공동주최: 교육공무직본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토론회]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 일시: 2025년 5월 17일(토) 낮 1시,
- 장소: 금속노조 4층 (경향신문사 별관)
- 주최: 교육공무직본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오픈채팅 참여하기

● 토론회 순서

사회: 정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발표 내용	시간
안내 및 토론회 참가자 소개	13:00~13:05
[여는 이야기]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정은경)	13:05~13:10
[마중물 이야기] 1. 학생인권 보장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자! (은선) 2. 성소수자 청소년과 학교 내 성평등 (은설) 3.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이대로 괜찮은가?(김숙영) 4. 양육자는 정말 교육 주체인가? (백운희) 5. 교육, 그 이상의 학교. 학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 (박성식) 6. 교원도 노동자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원노조법 폐기에 대해(안드레) 7. 학교에는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 (명숙) 8.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관료적 학교구조 (최은경) 9.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 (백종성)	13:10~13:55
질의응답	13:55~14:20
[모둠별 토론]	14:20~15:40
[전체 토론] & 단체사진 촬영	15:40~17:00

● 자료집 순서

[여는 이야기]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 정은경(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마중물 이야기]

1. 학생인권 보장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자!

- 은선(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책임활동가)

2. 학교 안 성소수자

- 은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3.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이대로 괜찮은가?

- 김숙영(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4. 양육자는 정말 교육 주체인가?

- 백윤희(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5. 교육, 그 이상의 학교. 학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

- 박성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6. 교원도 노동자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원노조법 폐기에 대해

- 안드레(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책편집위원장)

7. 학교에는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8.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관료적 학교구조

- 최은경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9.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

- 백종성(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평등 수칙

☺우리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서로를 다양한 가치를 가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나이와 직책에 관계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호 간의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을 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국적, 인종, 나이, 출신지, 학력, 종교, 질병 여부, 성별, 성별 정체성 및 성적지향, 혼인여부, 장애여부, 사회적 지위,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상대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당연해도, 상대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활동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에 관해 묻지 않습니다.

☺내가 느낀 불편함에 주목하고 누군과의 불편함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며 잘 듣고 성찰하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평등한 조직문화를 가로 막는 행위(언행)를 발견하는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동지가 나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방어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정은경(교육노동자현장실천)

학교는 여전히 전쟁터

작년 토론회에서 우리는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지, 무엇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확인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상품화하고, 학교를 교육서비스가 지불 능력에 따라 교환되는 시장으로 만들며, 불안정위험 노동으로 교육노동자가 교육이 아니라 생존을 먼저 걱정하게 만들고, 교육이 자본주의 체제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로 전락시킵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에서 체제의 균열을 '연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으로부터 그 연대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주체들이 연결되는 고리로 학교파업이 제안되었고, 학교파업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학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상상하고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¹⁾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학생에 대한 제지와 즉시 분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학생을 통제하고 인권을 제한하는 권력이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용되고 보수 정치인들의 공약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대선 후보는 학생을 교실에 격리해 '훈육'하는 '디텐션(detention)' 제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규직 교사가 교권을 외치는 사이,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는 기피 학년과 기피 업무를 떠 맡고 있습니다. 비교과교사라 불리는 보건·사서·상담·영양교사는 각종 수당, 행정 지원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담당하지만 불안정한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가진 수많은 직군의 비정규노동자가 있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산재와 죽음 속에서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파업을 하고 단식을 합니다. 학교운영위 거수기 역할 또는 민원인으로만 여겨지는 양육자 또한 학교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교육 불가능 학교에서 우리는 계속 서로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가능한가?

무력한 현실 속에서 이 토론회가 기획되었습니다. 현장은 각자도생하기 급급하고 외침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학교파업은 과연 가능할까? 연대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이 정의를 학교에 대입했을 때 학교는 민주적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학교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나요?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실천하

1)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토론회 발제문 -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연대와 단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편집위원), 2024.7.6

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가 주체가 되어 이곳에서 함께 민주주의를 경험해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를 경험한 우리가 또 다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를 꿈꿉니다.

리베카 솔닛은 <어둠 속의 희망>이라는 책에서 절망의 시대에 변화를 꿈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어보이는 불확실성이야말로 희망의 공간이다.”, “희망은 투쟁 없이는 흩어져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꿈꾸는 건 세상에 이미 존재한다.” 오늘 저마다 마음 속에 품고 있던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꺼내어 새로운 희망의 학교를 지어봅시다. 서로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연결되는 자리, 우리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내는 연대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학생인권 보장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자!

은선(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책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 학생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규율 중심의 생활지도, 권위적인 상호 작용, 그리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방식은 많지만, 학생의 목소리를 듣는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공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26.0%(4명 중 1명)가 최근 1년 안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고, 13.5%(7-8명 중 1명꼴)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살 계획을 세운 비율도 5.3%, 즉 청소년 20명 중 1명 이상이 실제로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봤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37.3%)이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은 현실은, 학생들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를 방증합니다.

학생인권 관련 연구에서는, 교사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지 못한 경험이 무력감,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이어졌다는 증언이 다수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구조와 문화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단지 '위계적 질서'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인정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단지 교사의 '배려'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되묻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일각에서 말하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이라는 프레임은, 마치 학생의 인권 보장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일인 것처럼 왜곡하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은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양보하거나 맞바꾸는 대상이 아니라, 학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학생을 존중하는 환경이야말로 교사 역시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멍니다. 2023년도 학생인권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학교가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고, 여학생 중 '두발 자유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겨우 25%에 불과합니다. 또, 정치적 표현이나 사회적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도 여전히 많아, 학생의 시민적 권리는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매우 미비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교육청 민원 외에는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교육청 민원은 ‘답변’만 하면 되는 구조이고, 교육청에는 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 학생이나 양육자 입장에서는 명백히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분노와 좌절이 쌓이고, 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고발이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교육 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규제를 풀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학생을 어떤 존재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이 학생인권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법은 단지 규칙을 바꾸는 법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노동자에게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에게는 어떤 법이 있을까요? 학생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고, 말할 수 없고, 결정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인권법은 교사와 학생 간의 개별적 갈등을 다루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학교의 규칙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법입니다. 존중과 참여, 평등과 자유를 학교의 일상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입니다. 교육 현장을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학교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학생인권조례의 근거 조항 마련
- 개성실현(옹의복장)의 자유, 체벌·폭언·성희롱·성추행 금지,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의 인권 구체화
- 전국 각 교육청마다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기구와 담당자를 두어서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
-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무로 명시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2023 서울학생인권실태조사』 보고서.
- 오현주, “청소년 사망 12년째 1위 ‘자살’...청소년 인구 또 줄어 782만명대”, 뉴스1, 2024년 5월 29일.
- 질병관리청. (2023).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202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성소수자 청소년과 학교 내 성평등

은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0. 성소수자 청소년이 마주하는 현실

학생인권 전반이 후퇴하고 있는 오늘날, 학교 안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이 만나는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안타깝게도 어둡고 무거운 단어부터 먼저 떠오른다. 학업 중단, 학교폭력 피해, 교차하고 중첩되는 차별과 혐오에 의한 각종 다중차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일차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차별의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학교의 묵인과 교사들이 위계를 앞세워 차별·혐오 발언을 일삼는 문제가 학생 사이 차별을 부추기기도 한다. 학교는 차별을 묵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소수자 청소년을 비정상이라 낙인 찍어 지도 대상으로만 대한다. 이런 적대의 벽 앞에서 차별과 혐오를 이유로 한 학교폭력 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교육을 통해 성소수자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접하기조차 힘든 상황도 성소수자 청소년의 현실을 악화시키는 데에 큰 지분을 차지한다. 보이지 않고 인식할 수 없으니 싫어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훨씬 쉽다. 차별이 교육 과정에서부터 내재되어 전해지는 것이다.

어둡고 무거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까.

1.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이 성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인식 개선과 충분한 보장이 필요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내가 무엇이며 누구에게 끌리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일컫는 개념이기도 하다. 청소년인권운동은 2000년대 후반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보장을 꾸준히 말해왔다. 청소년이 성적인 욕망, 지향, 자아정체성 등을 가진다는 걸 불가역적인 사실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나 젠더정체성을 그 시작부터 부정하면서 적극적인 성소수자 차별로 나아가는 폭력의 연쇄를 끊을 단초가 더 분명해진다.

2.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학생인권법과 더불어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양대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의 주요 적용 영역이 학교 등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우리는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에서의 차별 시정, 학교폭력 처리 과정 등에서의 차별과 같은 문제들을 제도권 안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기며 해결해나갈 수 있다. 이어 용의복장 규제 문제 등 성별이분법적 구분 체계를 바꿔내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오독과 오해로 진통이 잦았던 ‘양성평등’ 담론의 결과들을 ‘성평등’의 영역으로 옮겨낼 수 있다면, 학교 규칙과 문화에 반차별을 뿌리 깊게 새길 수 있을 것이다.

3.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현재의 학교 성교육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학교성교육 표준안 이후로 답보 상태다. 청소년의 삶 전반과 차별, 폭력, 권리 등을 함께 다루고, 소수자와 다양한 삶의 형태를 담은 포괄적 성교육을 전면 도입해야 차별이 당연하지 않은 문화가 학교에서 살아 숨쉴 수 있다. 시스젠더 이성애자만을 조명하는 성교육은 '정상적 섹슈얼리티' 외의 다른 삶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이는 차별과 혐오의 씨앗이자 거름이 된다.

4. 문제의식과 요구, 대안을 향한 노력들은 넘치도록 쌓였다

청소년인권운동은 물론이고, 사회운동의 여러 구석들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이 마주하는 현재의 악조건을 조금이나마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다. 그 노력이 종종 열악한 여건상 잠시간 단절되거나 흔들리기도 하지만, 성소수자 청소년이 지금과 같은 현실을 더 겪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점차 다듬어져 실질적인 대책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학업을 포기한 성소수자 청소년과 함께하려 하는 무지개교실이 그중 하나고, 집을 나온 성소수자 청소년의 여러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땡동 역시 그렇다. 우리가 축적해온 절박함과 노력을, 이제는 법과 제도 속으로 밀어넣어 또다른 사회적 변화로의 길을 뚫어내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이대로 괜찮은가?”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다른 주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일상적인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실제, 2019년에 제정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의 제1조(목적)에는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민주주의를 “학교구성원 모두가 자율과 자치의 문화 속에서 현안을 논의하며 공동 실천하며,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며 성장하는 학교의 실천 원리”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교육공동체의 한 주체로서 학부모가 요구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학교와의 소통은 단절되고, 학부모교육권과 교권은 상충한다는 개념이 부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심의기구이고, 학부모회는 각 교육청의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간을 둔 학교 교육활동 참여지원 기구이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얼마나 민주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학교구성원 특히, 학부모의 자율과 자치실현이 구현될까? 201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경험하고 있는 학부모로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지난 4월, 교육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 교사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폐지를 요청하는 정책제안이 제기되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AI디지털교과서 선정심의회와 관련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장에서는 있으나 마나 하니 폐지해달라는 교사의 요구도 있었다고 한다. 학교운영위는 학교장과는 독립된 유일한 기관으로 위원회 명의로 공인을 갖고,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함으로써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민주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구조이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수가 결정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서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섭외하기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당연직인 교장이 포함되어 있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회의가 진행되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인 구조에서는 학부모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위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이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흔하다. 많은 경우 실제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교장이 회의소집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위원을 배려하지 않고 회의시간을 정하거나(많은 경우 수업이 끝나는 오후3~4시에 맞춰 회의 진행), 심의 전 학부모나 학생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지 않거나(눈에 안 띄는 홈페이지에만

공지), 각종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동의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선정심의 과정에서도 담당교사가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의 실물시연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선정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2024년, 2025년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내용에서도 짧은 회의시간과 학교와의 불편하지 않은 소통만을 강조하기도 했다. 평화롭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법제화), 현장에서 느끼는 미비한 운영체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에 참여지원을 하고, 학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부모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2010년대 중후반 경기도에서는 학부모회네트워크 활성화, 학부모 학교참여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와 학부모회와의 민주적인 소통을 유도했었다. 그 결과 2017년, 2018년 경기도지역의 학부모들은 학부모회밴드나 학부모회카톡방 등을 통해 공식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소통할 수 있었다. 학부모회는 각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자, 누구든 학교 교육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정식 기구이며, 학부모회는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완충 역할을 해왔다. 학부모회의 정식절차를 거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학부모회에서 공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개선점을 효과적으로 찾음으로써, 학교와 학부모의 갈등이 개선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학교와 학부모회가 자연스럽게 단절이 되었고, 서이초사건을 계기로 학교는 학부모회를 악성 민원을 만드는 창구로만 바라보게 되었다, 언론이나 주변 상황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 학부모가 학교에 제기하는 민원의 양상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주로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업무를 어렵게 만들거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과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 이유 또한 완충역할을 하던 학부모회 활동의 위축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학부모회의 구성에 필요한 학부모 정보취합을 할 수 없도록 운영지침을 각 학교로 보내서 개별 학교의 학부모회구성도 제대로 못 한 상황이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학교안에서의 여러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학부모나 학생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교육주체가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3년 12월 학부모 지원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학부모정책과를 신설했고,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회 관련업무를 평생교육과로 이관했다. 이후, 학부모회나 학부모와 관련한 정책의 대부분이 학부모교육으로 변화했다. 학교 현장에서의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이 학부모교육의 부재가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듯 하나, 학부모는 교육의 대상자가 아니다. 학교가 교육주체 누구에게나 평화롭고 민주적인 공간이 되려면 학교장의 소통 의지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다. 학교장의 리더십역량의 부재와 방관이 지금의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를 만든 게 아닐까. 학부모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학부모 역시 학교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시작은 학부모회의 정상화이다.

“양육자는 정말 교육 주체인가?”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학부모는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 3주체”라는 말은 익숙하면서도 취약합니다.

학부모가 교육주체임은 ‘교육기본법’에서 보호자(학부모)를 학습자, 교원, 교원단체, 학교설립자/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당사자로 규정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보호자인 학부모가 학생의 권리를 대리해 학교 교육내용을 선택할 권리,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이해되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교육당사자로서 ‘주체’라고 인식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치맛바람’부터 ‘악성 민원인’까지 학부모의 교육 정책 및 활동 참여는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에 놓입니다. 교권침해가 부각된 이후 학부모들은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더욱 두려움을 느끼고, 위축된 상태입니다.

학부모 스스로 교육 주체로서 자각할 계기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점,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를 실질적 교육 주체로 대하지 않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점차 제도로 보장해 왔지만 ‘규정은 있지만, 제대로 역할하기 힘들거나’, ‘소비자로서 존재’하게만 하는 방식에 머물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선 김숙영 활동가의 발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녀가 학령기를 맞아 양육자가 학부모로 호명되기 시작할 때, 제도 안에서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만 왜 학부모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당위에 대한 설명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참여로 인한 ‘보상’이 뒷받침되지도 않습니다. 시간과 자원을 투여할 필요성을 느끼기 힘든 부분입니다. 학부모 총회에서 교권침해 등은 영상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지만 학부모 조직에 대해서는 개별 반, 담임을 만났을 때 소개되는 실정입니다.

지역과 학교급간, 시대별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회, 급식모니터링, 도서관 일일사서, 녹색학부모회, 시험감독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참여 여부를 조사할 때 이를 학부모의 봉사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담임이나 담당교사의 “힘드시겠지만, 바쁘시더라도, 어머니가 반 대표시니까, 회장 어머니께 부탁드립니다”는 말이 상징적입니다.

학부모들이 일정 역할을 자원하는 것은 해당 교사의 과중한 업무 중 하나를 덜어주고자, 자신의 자녀에게 무언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방책으로서, 중고등학교에서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자녀의 생기부 작성에 무형의 도움이 되고자 등등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학교 일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효능감에 대해서는 거의 공유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고, 코로나 19로 인해 그나마 양육자들의 교육 정책 및 현장 참여에서 전수와 계승의 내러티브는 상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장기간의 학교 휴업과 대면 수업의 부분적인 운영, 교외활동 위축을 겪었듯이 학부모들 역시 시민민주주의 교육과 문화 교육의 결핍을 경험한 것입니다.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어지던 참여 열의와 노하우가 실종됐다는 토로가 곳곳에서 목격했습니다. 파편화된 양육자들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무력감을 호소했지만, 이를 지원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학교는 사회를 고스란히 반영하기 마련이어서 양육자를 향한 일선 학교의 시각은 성별 고정관념 속에 구현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3년 무렵, 교권 이슈가 가시화되면서 교사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는 ‘진상부모 리스트’, ‘진상부모 단골 멘트 모음’ 등이 회자됐습니다.

그 중 1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 아빠가 화나서 뛰어온다는 걸 말렸어요”/“아이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진상 부모라고 했지만, 상정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엄마’입니다,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성별화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상 부모를 저격했다는 저 문장은 오히려 여성들의 사회적 발언권이 낮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여성 양육자로서 서글펐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양육자들이 교육 현장을 비롯한 사회적 공간에서 ‘남성’ (양육자)를 대리로 내세우는 것은 이들의 권위를 빌려야만 말이 먹힐 것이라는 경험적 교훈의 결과입니다. ‘남성 외벌이’ 경제활동구조에서 돌봄과 가사노동은 여성들에게 일임되면서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영역 역시 여성에게 분배돼 있지만, 여성 양육자의 발언권은 그만큼 존중받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교의 공식 행사에서 참석 학부모를 향해 “어머니”, “어머님들”이라고 부르는 상황들은 상당수 존재합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위원”대신 “어머니”라고 부르는 관리자(교장)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문제 상황에서 양육자들은 개인의 역량으로 이를 풀어가야 한다는 압박에 놓입니다. 그런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나 노력 대신 일부 양육자들의 극단적인 대응을 가시화하거나 과다대표하는 경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양육자들은 학생들의 보호자로서 사안에 개입해야 하지만, 사안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한계를 지닙니다.

일례로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의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학부모가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 타당성을 논해서 관련 요구를 수렴, 이해시키는 절차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서이초 사태 이후 논의가 진행된 학부모 민원 창구 개설 방안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대응 성격적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체계, 학부모 내부의 지원 조직이 미흡하다 보니 교육청에 문의해도, 학교에서도 사법 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전에 존재했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 중요성, 재검토 필요성 역시 알기는 어렵습니다.

양육자들의 무력감은 적극 개입하려는 관리자의 부재와 이들의 소극성과 방관주의가 빚는 갈등 악화, 사법적 해결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커져만 갑니다.

신자유주의는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고 개인적 해법에 골몰하도록 개개인을 추동합니다.

공동체성, 시민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 성취하려는 노력을 고민하고 이를 가로막는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진상 학부모, 악성 민원인의 집단으로만 치부한다면 건강한 담론과 공론장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학교라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제한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골몰한다면 주체 간 분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연대를 통한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는 과정 역시 요원할 것입니다.

민주적인 학교는 “협조적이고 교육적으로 참여하려는 학부모”, “교육대상인 학부모”가 준거집단이 되는 현상을 멀리해야 한다. 학부모가 ‘선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 그 이상의 학교. 학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 아이들의 삶과 성장 전체를 지원하는 종합적 공간으로 학교를 재정의하자
- 학교를 새롭게 정의할 중요한 열쇠, 교육복지 그리고 학교공공성
- 격차와 서열의 위계사회에서, 연결과 협력의 민주적 공동체로
- 아이들의 권리, 노동의 권리, 함께 지키는 학교로
- 배움과 돌봄이 공존하고, 민주적 공동체를 체득하는 학교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 앞서, 학교에 대한 재정의 교육 이상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학교는 단지 교육기관을 넘어 각자도생 사회의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기반이자 민주적 공동체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학교는 단지 지식만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이 삶을 배우고, 처음으로 사회 공동체를 경험하며, 아나가 관계를 확장하며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익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에 대한 생각이나 정의는 과연 그러할까?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정의는 학교의 당연한 핵심 기능을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엔 서열과 배제의 언어로 쓰이고 있다. 즉, 시험 능력주의의 승리자만 교육을 해야 하고, 그러한 자격을 획득한 자만이 학교의 중심이며, 그들을 중심으로 교육 권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말하지 않는 생각들이 바로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말의 저변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난 이 말이 안타깝다.

학교는 여전히 경쟁과 서열,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이 고스란히 아이들의 삶에 전가되고,

학교는 학생의 전인적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현실에 머물러 있다.

이런 학교를 새롭게 정의할 중요한 열쇠가 있다.

바로 ‘교육복지’고, ‘학교 공공성’이다.

교육복지는 가난한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모든 아이들이 겪는 성장의 불평등, 학습의 불평등, 돌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적 책임의 다른 이름이 교육복지고 학교 공공성이다.

교육 공공성이란 생각만론 우리 사회와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다양한 일들로 생각이 확장되지 못한다. 교사 이상의 역할로 생각이 확장되지 못한다.

학교는 더 이상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전체를 지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함께 어울려 평등한 밥상을 누리고, 공동체의 돌봄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관계를 배우고,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장이 학교여야 한다.

이 역할의 중심에는 교육복지 인력, 즉 급식노동자, 돌봄노동자, 특수교육노동자, 상담노동자, 사서, 강사, 교무행정노동자, 사회복지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는 여전히 비정규직 차별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민주주의가 아닌 무시와 배제로 점철된 주변부에 놓여있다.

따라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직결된 과제다.

아이들을 돌보는 이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그 위상이 높여질 때, 비로소 아이들의 일상의 권리도 평등하고, 풍성하게 보장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구성원 간의 권력 관계도 바뀌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육공무직, 학교와 지역사회는 수직적 위계와 구별이 능사가 아닌 평등한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바꾸는 일은 단순히 학생자치 활성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만으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서로 다른 위치의 차별과 권력이 해소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는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넘어,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배우고 체득하는 작은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을 만드는 또 하나의 출발점은 교육복지 강화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복지와 학교 공공성은 개념 자체가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²⁾

교육복지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지원 체제 패러다임으로 인식되지 않고, 단지 문제 상황이 생기면 학교에 끼워 넣는 일개 사업들로 분산돼 있으며,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방치되는 학교의 부담 요소로 치부될 뿐이다.

이러한 현실을 깨고, 학교를 공공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고, 교육과정과 교육복지라는 두 개의 기본과제로 재정의돼야 한다.

그렇게 학교는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로서, 가정과 사회의 동반자로서, 모든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공성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그 길을 함께 여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2) 교육복지란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과 같은 각각의 파편적 사업으로 협소하게 이해돼선 안 되고, “교육의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제반 공적 교육지원 체계”로서 총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교원도 노동자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원노조법 폐기에 대해

안드레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책편집위원장)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는 그 내부에서부터 신뢰가 사라졌다. 교사, 학생, 양육자는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 대립 구도는 학교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교사 보호를 명분으로 한 교권 4법 개정 및 생활지도 고시는 구성원 관계를 이기화하고, 구성원 사이 다툼을 제도화하고 있다. 서이초 사건으로 정부는 교권이 실추된 원인을 학생 인권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규정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분위기를 조장했다. 이런 흐름에 교사들은 동조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사업 방향을 교권 중심의 활동으로 변하게 하였다.

스스로에 대한 질문, 우리는 노동자인가.

학교 공동체 붕괴로 교육 현장이 전쟁터로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교원의 노동자성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갖는 노동자성은 무엇인가, 교원에게 제한되는 정치 기본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권을 강조하며 학생과 양육자를 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만들 수 없지만 함께 파업할 수 없는 제약이 교원을 반쪽짜리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OECD국가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뿐이며 많은 국가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활동이 교원에게 보장되지 않으면서 교권 보호라는 개념이 양립될 수 없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정치 기본권은 정치적 중립성,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허울 속, 국가공무원법, 초·중·고등학교법, 정치활동과 관련된 정당법, 공직선거법, 교원노조법 등 다양한 법제도 형태로 봉쇄되고 있다. 가장 극명한 사례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규정한 '해고자 조합원 자격' 문제로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 규약 시정 명령', 박근혜 정권의 교원노조법 제2조³⁾,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근거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위에 언급한 법률은 개인뿐 아니라 노조의 모든 노동,정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교원과 공무원은 학교 공동체에서나 사회 속에서도 교육 주체로 바로설 수 없다. 즉 평등과 민주성이 학교에서 회복하려면 노동자와 동등하게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정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교원, 공무원 노동,정치 기본권은 왜 필요한가

노동3권은 노동자에게 개인적인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객관적 가치 질서를 담보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 강제되고 있으며, 교육과 정치를 본질적으로 분리하고, 교원의 정치적 행위와 비정치적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영향력을 경계하여 학생의 교육기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박탈되어 있다.

3) 제2조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2020. 6. 9. 법률 제1743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그러나 노동자로서 교원이 갖는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 금지로 침해할 수 없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리는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정치적 기본권은 개인의 기본권 실현 차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교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교원과 공무원 역시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향유하여야 한다. 교원과 공무원 직무의 성격을 구별함 없이 오직 그들의 신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3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다른 노동자와 차별하는 것이다. 교원이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에서 다른 노동자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노동자의 노동3권은 그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므로, 공무원인 교사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이유로 노동3권이 박탈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 무엇이 바뀌었는가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부분적 변화가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및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국무회의심의의결 및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개정되었고, 2020년 6월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 교원노조법(법률 제17430호)의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교원노조의 가입대상 범위 확대(유아교육법상의 교원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 ■대학교원의 개별학교 단위 노조설립과 교섭가능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규정되면서 노동조합 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측이 교섭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사업장 내의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5항). 그리고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면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6항).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9항).⁴⁾

교원노조법 개정 전 총 15개 조항 중 11개 조항이 권리 제한

- ① 해고자 조합원 자격 제한 (제2조) ->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 ②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제3조)
- ③ 학교단위 노조설립 불인정 (제4조)
- ④ 노조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사항, 임금 지급 금지 (제5조)
- ⑤ 교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음 (제6조)
- ⑥ 단체교섭 과정에서 국민 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제6조)
- ⑦ 법령·조례 및 예산에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효력 없음 (제7조)
- ⑧ 단체행동권 전면 부인 (제8조)
- ⑨ 직권중재 가능 (제9조, 10조)
- ⑩ 노동쟁의 중재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조정 전담 (제11조)
- ⑪ 쟁의행위 나 중재 거부 시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 조항 (제15조)

교원노조법 개정의 한계

1962년 개정된 헌법에도, 공무원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노동3권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은 애초부터 노동3권을 제약했고, 노동조합 설립마저 불허했다. 89년 전교조 창립과 1500명의 교사 해직 등 오랜 고통과 투쟁 속에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은 특별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교원을 일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교원노조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들로만 가득 차 있다.

4) 4)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쟁점 연구, 김형준,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년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이 되거나 노동기본권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긴 하지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기에 단결권 자체는 유명무실하다. 이렇듯 교원노조법 개정에도 근본적인 한계는 결국 단체행동권의 제한이다. 교원노조법 제8조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경우 교원노조법 제15조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노동기본권을 허울뿐인 껍데기 노동기본권으로 만들고 있다.

해고자·실업자·퇴직교원 노조가입 허용한다지만...

- 해고자·실업자·산별노조 임원은 사업장 내 자유로운 조합활동 불가!
- 해고자·실업자는 기업별노조 임원 불가!

오히려 없애야 할 악법 유지! ● 단체행동권, 정치기본권 부정, 단체교섭 의제 제한

독소조항 추가! ●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조항 추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 삭제되더라도...

-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단협으로 임금 지급을 규정하더라도 무시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결국 바뀔 게 없음!

진전 없는 개악안 교원노조법

순번	개정안 주요내용	ILO 기준	문제점
1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위반	- 제2조 4호 라목 본문 존치 - 해고자 조합활동 차별
2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 제한	위반	- 산별노조 조합활동 심각한 침해 - <u>실질적 제3자 가입금지 부활</u> - <u>명백한 노동개악</u>
3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 자격	위반	- 해고자는 기업별노조 임원 X - 현재와 다르지 않음
4	전임자 급여	위반	- 국가가 여전히 개입·통제 -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음
5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반	- 소수노조 교섭권, 쟁의권 박탈 - 현재와 다르지 않음
6	교섭 동의 원칙	부족	- 노력한다는 선언적 규정 불과 -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필요
7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위반	-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u>명백한 노동개악</u>
8	직장점거 금지	위반	- 주요업무시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점거금지 규정 신설 - 명확로운 피켓팅, 현장순회 활동도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 - <u>명백한 노동개악</u>

(출처-ILO핵심협약 비준 추진 관련 노조법 개정 등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

교원의 정치,노동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경쟁 입시교육의 지속과 교육 양극화는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불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왔다. 인권과 교권의 대립으로 가속된 교육공동체 사이 갈등과 경쟁은 교육 전반을 파편화하고, 문제를 공동체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법과 제도로 강제하고 규정하며 상호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정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 기본권이 박탈된 교원은 사실상 정치적 제한능력자로,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후보 정책 평가가 불가하며 교육 정책에 교원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반영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인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비단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방법 반드시 '교원노조법'일 필요는 없다. 국가공무원법과 노조법 등에서 관련 조항만을 개정함으로써 즉, 일반 노동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개정하고('집단행위 금지' 부분을 삭제), 노조법 제5조 단서 조항 역시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와 공무원 역시 일반 노동자와 같이 노조법상 노동자로서 노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존재 자체가 문제인 현행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즉 노동3권 쟁취를 이뤄야 할 것이다.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각 정권과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주장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벌려놓은 선택지에 우리의 권리를 가두는 셈이다.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제약될 수는 없다. 교원노조법 폐기, 온전한 교원 노동3권 쟁취가 필요하다.

학교에는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여자는 남자말에 말대꾸 하지않는다”, “여자 목소리는 80 데시벨을 넘어서 안 된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다” 계집신조 중

- 계집신조 -

1. 여자에 방은 주방이다
2. 여자가 낼수있는 소리는 설거지할때 물소리와 서방님 밤일을 돕는소리 뿐이다
3. 여자는 남자가 부르면 “네 주인님” 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4. 매일 아침에 육,해,공이 포함된 12첩 밥상을 차려야한다
5. 여자는 해가지고 나면 밖에 나가지 않는다
6. 여자는 남자말에 말대꾸 하지않는다
7. 여자는 남자가 부르면 3초안에 대답한다
8. 여자가 입을수 있는 치마는 앞치마 뿐이다
9. 여자목소리는 80데시벨을 넘어서 안된다
- 10.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다

도대체 어느 시절 이야기냐 싶은 말들이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한다. 21세기에 조선시대에나 나올만한 말이 떠돌고 있다. 10대의 ‘계집신조’ 유행은 성인지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지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더구나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학교에 성인지감수성이 얼마나 없는지, 성평등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성폭력을 배우는 곳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1년이 다되어가는 현재 달라진 것이 없다. 딥페이크 가해자들도 대부분 10대 남성들이었고, 피해자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이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학교

학교는 다양한 행위 주체와 복잡한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곳이다. 학생과 교사, 평교사와 교장 등 관리자, 교사와 교직원,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복잡한 행위 주체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곳이다. 여기에는 여성, 남성,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 여러 성별과 성적 지향이 공존함에도 자신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소수자도 있다. 성별 위계는 복잡한 권력관계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또한 학교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체제의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양육자나 학생의 집안이 영향력을 미치고,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가 영향력을 미친다. 가부장제의 성별 권력관계는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영향력(발언력 포함)을 행사하고 여성은 쉽게 폭력 피해의 대상이 된다.

다양한 행위주체와 복잡한 권력관계가 가로지르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차별이나 폭력을 단순히 나이나 성별만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성폭력의 경우에는 성별 편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제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자는 여학생이든 여교사든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범죄 대상이 되었다. 실제 젠더폭력은 여학생만이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행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학년도 5050건보다는 줄었지만 2022학년도 3035건보다는 늘었다. 교권이란 개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실태조사 결과에 나온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성폭력이 는 것은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할 대목이다. '성적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324건(7.7%) 이나 되었다. 교육부가 지난 해 12월 제시한 실태조사 설문 문항이나 대책에 성평등 교육은 없다. 성평등 인식과 가해/피해경험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나 분석도 없었다. 그저 스마트폰 사용량을 조사하며 사용량과의 연관성만 확인했다.

가부장 사회에서 성폭력은 성별위계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의 결과다. 따라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는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했지만, 여기에 성평등교육은 없다. 그저 '폭력예방'이라고 두루뭉술 말한다. 그리고 존중과 배려, 동의라는 '예의'의 문제로 협소하게 접근한다. 젠더폭력이지만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다.

교육부의 이러한 물젠더적인 성폭력 대응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4월에 나온 '디지털 성폭력 에스오에스(SOS) 가이드'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은 구체적이지만 이에 대한 예방이나 성인지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교사용에서도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성평등교육은 없다. 그저 가해자는 범죄자로 낙인찍지 말고 피해자를 탓하지말라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얼마 전 양천구의 A고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학생의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동료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가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남역 여성살해에서 드러났듯,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개인이 갖고 있는 여성혐오, 또는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가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서 단지 학생의 특수한 정신과적 이력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은 신분이 교사든 같은 학생이든 때려도 되고 때릴 수 있다는 뜻이며,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아도 되는 멸시, 여성혐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물론 교실에서 교사가 지니는 학생에 대한 권력 행사가 기본으로 전제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도 빠서는 안 되는 복잡한 맥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극우세력의 성장과 정치권의 혐오정치

정부가 성평등이란 말을 쓰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다. 보수개신교 단체의 압력과 그들의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삼으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이명박 정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개신교 기반의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만이 아니라 각종 인권법을 ‘동성애확산법’, ‘빨갱이확산법’이라며 반대하면서 성장해 오는 동안 정치인들은 이들의 표를 잃지 않으려고 이들의 반인권적 주장을 수용하면서 한국 사회 내 성평등 제도와 문화는 뒤로 가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이나 성평등 교육은 점점 부실해져갔다. 청소년 년 성교육 강사들은 수업 전 학교 쪽으로부터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이란 말을 써달라’는 요구까지 받을 정도다. 성교육이 필수교과목이 아닐 뿐 아니라 성교육이 아닌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많다. 5)

특히 2013년 당시 충격적인 사건은 보수개신교의 압력으로 김한길,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을 철회한 사건이다.⁶⁾ 이후로 보수개신교는 더욱 악랄하게 활동했고 정치인들은 인권을 포기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후 박근혜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조차 이들의 압력에 굴했다. 문재인은 선거 시기에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했지만 선거 후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을 두려워해 ‘젠더’나 ‘페미니즘’을 지웠다. 2018년 터져나온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로 이는 더욱 심해졌다. 2019년과 2021년 페미니스트 교사나 페미니즘 수업을 마치 편향된 사상교육인양 보수 부모단체들이 고발하며 공격했으나 정부(교육부)는 이를 손 놓고 방치했다.⁷⁾⁸⁾ 심지어 문재인 정부하에 민주당은 젠더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 방지법으로 지웠고, 교육기본법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었다. 설상가상 젠더 갈라치기로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성평등 정책은 대거 후퇴한다. 윤석열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소수자’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기존 교육과정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고 쓰던 표현을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바꿨다. 후퇴된 법제도 하에서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의 압력으로 2024년도에는 성평등도서를 폐기하는 도서관이 늘어날 정도까지 되었다. 그렇게 이들의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확대되고 그 결과 표준이 되었다. 또한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기업에 까지 확산되었다. 그 결과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페미’라는 말은 비난과 낙인, 조롱의 단어가 되었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로 드러난 극우단체들은 대부분 극우개신교 집단이고 이들은 앞서 말한 동성애 혐오세력과 커다란 교집합을 이룬다. 이들은 단지 여성 인권이나 성소수자 인권에만 반대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사회 전체를 과거의 상태로 되돌리려 한다. 이들의 가치 지향은 정상가족주의와 종교광신주의(성서근본주의)와 자본주의 질서 유지를 기본으로 한다. 정상가족주의는 성역할에 따른 가족과 국가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기에 순종적이지 않은 여성/ 성규범을 따르지 않는 성소수자들은 조롱이나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극우단체는 한술 더 떠 비난을 넘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도를 무너뜨리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여성혐오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7214.html

6) <https://www.yna.co.kr/view/AKR20130419160800001>

7) <https://www.khan.co.kr/article/201709202144035>

8)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98396.html>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 확산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여성혐오문화, 성소수자혐오 문화는 쉽게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나이를 불문하고 영향력을 미치는데 특히 사회적 판단을 할 경험이 주어지지 않는 10대에게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중고에서의 성평등교육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성평등사상, 페미니즘 사상을 불온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상태에서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넷플릭스 영화 <소년의 시간>에서 보이듯, 10대 남성들의 여성혐오문화, 성인지감수성 저하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인 백래시다. 혐오의 정치화, 혐오의 대중화가 된 시대에 학교에서는 성평등 교육이 너무나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은 없고 성교육조차 유네스코가 세운 포괄적 성교육을 하고 있지도 않다. 유네스코가 말하는 포괄적 성교육이란 젠더 기반 폭력(GBV) 및 젠더 불평등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인정하고 안전하게 성적 권리와 관계를 유지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육을 말한다. 빠른 성교육은 자신의 성적 권리, 섹스를 스스로가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은 성교육을 강화한 이후 첫 경험 연령이 1년쯤 늦춰졌다. 성교육을 통해 내가 언제쯤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될지, 성관계를 지금 하는 것이 내 삶에 유리한지를 아이들이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다.⁹⁾



9) <https://www.khan.co.kr/article/202301032044005>

암담한 정치

대선 시기 후보들이 보이는 태도는 암담하다. 윤석열 퇴진 광장에 그렇게 많은 2030여성퀴어들이 있었지만 유력 대선후보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성평등이나 여성인권정책에 거리를 두고 있다. 심지어 차별 금지법이니 재생산권리,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남성들의 표가 떨어진다고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도 성평등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암담한 정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젠더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그래서 이를 시정하지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밖에 없다. 성평등도서를 읽고 페미니즘 교육을 강화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인권단체들과의 교류,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 등 보수정당들에게 성평등인식과 제도의 후퇴는 극우세력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열심히 설파하면서 성평등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도록 요구하는 일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극우의 성장에는 민주당 같은 보수당조차도 극우개신교집단의 압력에 밀려 성평등정책을 후퇴시켰기에 그에 자심감을 얻으며 세력을 불려왔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마디로 혐오의 정치에 동참(방조)했던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해야 한다.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관료적 학교구조

최은경(A학교 공대위)

이번 토론회의 제목-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제목에 답이 들어있다. 민주적인 학교가 가능해지려면 먼저 평등한 학교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교사·학생·학부모·교육공무직: 학교의 주체라고 하지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존재

교사는 교육법상에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노동자의 권리도 정치기본권도 박탈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 협의회가 열리지만 주로 관리자의 결정 사항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며, 교사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관리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명확한 지위가 없는 상태입니다.

학생도 교육의 주체라고 하지만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라는 조례조차 취소당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교문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학교의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도 학생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사 협의회나 교직원 협의회, 학생회 등은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는 법적 권리가 있지만, 학부모들은 학교 안의 사정이나 교육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안의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 구성원 대다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일들은 누가 결정할까요?

교장이 모든 권한 가지는 구조.

평등할 수 있는 학교에서 평등을 깨는 존재.

그러한 구조에 순응할 사람만 교장이 되는 구조.

국가교육과정, 교육부와 교육청의 수직적 구조.

A학교의 경우 지혜복 교사와 학생들과 보호자들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의 관료적인 행정폭력에 의해 성폭력 사안은 축소 은폐되고, 피해 학생들은 2차 가해에 시달리며 학교 안에서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돕던 지혜복 교사는 부당 전보되고, 이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자 해임까지 되며 학교에서 배제되는 행정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강원도의 유천초 사례 역시 학교 구성원들이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을 교육청이 감사와 징계로 막았다. 교육청에서 행복더하기 학교라는 혁신학교를 지정했지만 교장의 권한과 교육청의 구조를 위협하는 진짜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2009년 경기를 시작으로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공교육 혁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혁신학교는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그 중 핵심은 다모임이라는 공동의 회의체계와 그 회의 체계를 존중하도록 하는 힘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교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일반학교와 달리 교사들이 교장에게 회의체계의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힘,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다수 교사들의 요구가 힘이 되었습니다. 다모임으로 학교 내 문제 상황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문제 상황에 대한 효율적이고 교육적인 해법들을 찾아나가는 모습이 매우 민주적이었다.

다모임은 모든 주체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사 다모임, 교직원 다모임, 학급·학년·전체 학생 다모임, 다양한 학부모 다모임들의 의견과 결정들이 모두 존중되고 수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사례를 들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성교육 TF팀을 구성하고 학년별 성교육을 위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등을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학교 전체에 성평등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했습니다. 아버지 성교육 모임도 생겨서 학교의 지원을 받으며 잘 운영되었습니다. 학생 다모임도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학급마다 교사와 보호자들이 매달 모여 학급의 일을 공유하는 '반모임'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등한 법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며 평등학교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주체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하고 실천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이초 이후, 교육노동자운동의 과제에 관하여

백종성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교사의 일을 합리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교육국면을 통제하기 위하여 여러 절차가 도입되는 속도가 증가하면, 테일러리즘이 기업에 도입되었을 때와 비슷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 교사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고, 블루칼라·핑크칼라·화이트칼라 노동자들과 교사들이 처지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 단계이다.”¹⁰⁾

1. 교육의 상품화와 학교의 사법화

교육기본법 2조 상 학교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이다. 즉, 명목상 공교육은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며, 교육노동의 산출물은 상품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는 자신이 내건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한다. 교육을 둘러싼 모든 것이 입시를 위해 상품화된 상황은 학교를 일종의 상품서비스 판매기관으로 인식하고 취급하게 한다. 교육의 상품화다.

상품을 두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흥정을 벌이듯, 교사-학생-학부모는 교육 내용과 성적 산출의 제반 과정을 두고 분쟁한다. 그리고 그 분쟁의 조율과 해결은 점차 사법기관, 혹은 사법기관과 유사한 처리 기구에 맡겨진다. 학교의 사법화다.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사이 갈등 해결이 사법기관을 통하는 빈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토론과 합의 여지를 좁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사의 고통을 더 무겁게 한다. 각종 위원회 등 학교를 둘러싼 공동체는 행정장치일 뿐 ‘자치’와 거리가 멀다. 이런 ‘학교붕괴’ 진단은 1990년대 후반부터 나왔으나 정부와 교육당국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교육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해왔다.

학교의 실패는 첫째, 원론적으로 보면 ‘학교를 졸업하면 어엿한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의 실패, 즉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실패다. 둘째, 교육정책으로 보면 멀게는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으로까지 올라가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철저한 실패를 뜻한다. 이는 ‘수요자 중심’, ‘선택권’ 등 수월성(excellence) 교육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었다.

학교의 실패는 오래된 일이다. 학교붕괴를 다룬 ‘학교를 넘어서’ 초판은 1998년에 나왔다.¹¹⁾ ‘학교붕괴’ 진단이 1990년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돌아보자. 1994년에 수능이 시행되었다. 수능 도입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수능 도입을 필두로 한 교육재편은 계급과 신분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를 심화했고, 이는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의 고리가 공고해짐을 뜻했다. 이는 한편에서 교육과정의

10) 마이클 애플, 『교육과 권력』, 한길사, 205p.

11) 물론 이 책의 결론, ‘탈학교 운동’은 극히 퇴행적이다. ‘탈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집단,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낼 수 있는 집단은 중산계급 이상이다.

일정한 자유화와 다양화를 동반했는데, 이는 학생이 유년기부터 체득한 문화적 자원을 평가과정의 주요 요소로 편입하는 과정을 동반했다. 학교 밖에서는 IMF 구제금융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일정한 '민주화'의 외양을 취했다. 이 교육 재편은 교육을 망치는 만악의 근원으로 규정되던 '주입식 교육'의 상대적 완화를 뜻했으나, 재편을 설계한 집단도, 이익을 얻은 집단도 지배계급과 중산계급이었다. 교련이 사라진 자리에 수행평가가 도입되는 과정은 극히 계급적이었다. 다양해진 선택의 폭과 평가기제에 조응해 다양한 교육상품이 쏟아졌고, '계급'과 '성적'의 연결고리는 촘촘히 강화되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으나, 노동운동과 향후 노동자로서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은 여전히 배제되었다. 사회의 형식적 민주화, 교육의 형식적 민주화, 그 성과를 독점한 것은 중간계급과 지배계급이었던 셈이다.

과거,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극도로 억압적인 공교육을 지탱하던 기둥은 '교육을 통한 계급이동'이었다. '말죽거리 잔혹사'의 야만적 학교를 지탱했던 것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신화였던 셈이다. 이 신화의 해체과정은 곧 지배계급과 중산계급 주도의 전면적 교육상품화였다. 한국 자본주의는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약속하나, 그 약속을 극소수에게만 이행한다. 이 '극소수'에 포함되기 위한 무한의 투쟁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2. 서이초 사건을 돌아보며

서이초 사건은 학교의 실패와 교육노동자의 고통을 극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사건 이후 교사 집회는 그 분노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동체의 재구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집회에서 배제된 것은 '정치'였고, '조직'이었으며, 다른 교육주체와의 '연대'였다. 반정치적 정서 속에 주된 대안은 '교권'으로 집약되었다.

'교권 회복'이라는 슬로건에 앞에 문제의 구조적 원인 - 즉 교육의 상품화, 사법화, 교육현장 민주주의의 부재를 극복할 방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와 보수세력은 이 틈을 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교사의 통제권 강화'라는 반동적 입법 공세에 나섰다.

이런 흐름은 교육의 위기에 진단과 전망을 제공하지 못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전교조 내에서도 일종의 '교육전문가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현장 노동조합은 특정 전문가 집단의 조합적 이해를 지향하며 학교 내로 침잠해서는 안된다. 어디 교육'문제'가 '교육'문제던가? 학교의 실패는 단지 교실 안의 문제가 아니며, 자본주의 재생산의 균열이다. 그렇기에 인간화 교육은 학교 담을 넘 나드는 실천 없이 불가능하다.

3.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연대

학교는 계급과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기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또한 그에 맞서는 경향이 충돌한다. 교사는 괴로워하거나, 이 질서에 순응하거나, 저항한다. 다수 학생은 구조적으로 낙오하며, 일부는 이탈한다. 이런 과정은 한국 교육위계의 하층으로 갈수록 심해진다. 이런 점에서, 잘 돌아가지 않는 학교는 오늘도 수 많은 잠재적 저항주체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운동의 과제는 이를 조직하는 것, 논

의의 장을 조직하는 것, 그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교육주체의 연대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재구성이다. 교육노동자 민주노조, 진보적 학부모 조직, 청소년 조직의 확대를 지향하며,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실천과 함께 집단적 저항주체 형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학교는 끝없는 기능고장 속에서 이전투구의 장이될 수 있을 뿐이다. 의식화, 조직화, 공동체의 재구성으로 나아가자.

4.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첫째, 학생인권에 대한 모든 공격에 반대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학생을 교육현장의 주체로 세우는 운동이며, 교육현장의 주체로 선 학생은 교사의 노동권 침해에 맞서 연대해왔다. 교사총원과 교육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교육노동자들의 연가투쟁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와 연대를 기억하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세력의 교사 노동3권 탄압을 기억하자. 정부와 교육관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개탄하면서도, 교사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노동3권 행사를 억압해왔을 뿐이다.

둘째, 교육노동자 확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진보적 교육내용에 대한 부담 간섭 폐지가 시급하다. 모든 교육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대하는 싸움에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가 함께 나서야 한다. 유명을 달리한 서이초 교사는 초임이었음에도 담임과 네이스 업무를 맡아야 했다. 인력이 부족한 결과 상대적 약자에게 기피업무가 맡겨진 것이다. 학교폭력 담당 업무도 마찬가지다. 2023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등 민원담당 교사 중 33%가 10년 미만 저년차 교사로 나타났다. 이 중 355명은 신규임용 첫 해 학교폭력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내용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어떠한가. ‘교원의 정치중립’을 명분으로 정작 진보적 교육활동만 탄압 대상이 된다.

셋째, 허울만 남은 학교공동체를 회복할 실질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물론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 등 법적 심의기구가 있으며 이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는 구색에 불과할 뿐이다. 현실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의사를 관철하는 기구에 불과해, 형식과 절차만 남거나, 유력 인사가 각자 이익을 관철하는 장으로 전락한다. 문제는 실제로 자치를 가능케 할 주체들의 힘을 조직하는 것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교육노동자의 의견을 추동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교사에게 힘이 있어야 한다.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필수적이며, 학교 운영과 자치업무를 맡은 교육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 내 학생 자치회, 학부모 자치회를 활성화하고, 교육노동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가능케 해야 한다. 다수 학부모는 먹고살기 바쁜 노동자 민중이다. 노동자 민중의 실제 의사를 반영하려면 주체에게 참여할 여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급 노동시간 인정 등 학교운영에 참여를 가능케 할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을 학교운영의 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앞서 강조했듯, 이는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교사의 노동권도 강화한다.

넷째, 민주노조의 연대적 실천을 확대하자. 필요한 것은 학생과 교육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확대할 조치, 학교 내 차별과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자와의 연대, 학교공동체를 회복할 조치다. 학교를 바꾸는 근본적 대안을 제기하며, 민주노조가 왜 존재하는지를 실천으로 증명할 때다.

모둠 토론

✎ 내가 바라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만들어본다면?

다시 만드는 교육!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10대 요구안>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학생인권과 대립해 갈라치기하고 교사, 학생, 양육자, 학교 비정규직들로 하여금 서로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교육재정 파탄과 교육노동 불안정화를 강행하는 동안 학생 인권은 추락하고, 교사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양육자는 학교로부터 외면받고, 교육공무직은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회 구조 속에서 학교 안 주체들은 주체로 서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진 청소년, 양육자, 교육공무직, 교사 4주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대립구도를 깨고 6월 3일 '다시 만들 세상'에서 '다시 만들 교육'을 위한 10대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지금, 다시 만들 세계에서 '다시 만드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10대 요구안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각 교육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

- 학생의 기본적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 온전한 자치권 보장, 학교 내 인권기구 설치 및 모든 주체가 차별받지 않는 교육

2.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각 교육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

-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폐기를 통한 온전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3.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각 교육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

- 각 주체들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자치 기구 법제화 및 권한 강화

4. 학생의 성적만 따지는 교육기관이 아닌 삶을 돌보고 지원하는 공공교육복지기관으로서 학교를 탈바꿈하라!

- 공공교육복지기관으로서 학교를 재정의하도록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교육복지 법제화

5. 학교 안 비정규직 철폐하라!

- 땀질식 인력 메꾸기가 아닌 필수노동으로서 교육노동자 노동구조를 개선

6. 학교장의 독재적 권한 축소하라!

- 학교장 권한 축소, 교장선출보직제, 현재 중앙집중형 승진제 폐지

7.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하라!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양육자,교육공무직,교육공무원 위원 참여를 제도화,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정상화, 정기적인 공론장 열기

8. 포괄적 성교육 법제화!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해체하고 다양한 삶을 익히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하라!

- 페미니즘 교육, 노동권 교육,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능력주의에서 살아남은 엘리트 교원양성과정인 아닌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교원양성과정 혁신

9. 교육주체가 기반이 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하라!

-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정책 하달 방식 해체, 교육공동체(학생,양육자,교직원)가 직접 교육정책 수립

10. 학교 노동환경 개선하라!

- 학교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학교에 대한 인력과 재정 확충, 수업 시수 대폭 감축